

대전지방법원 2021. 8. 18 선고 2020가단108865 판결 [사해행위취소, 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1. 7. 7.

판 결 선 고 2021. 8. 18.

주 문

1. 피고 A는 원고에게 159,654,198원 및 그 중 118,856,409원에 대하여는 2019. 12. 30.부터, 38,946,424원에 대하여는 2020. 3. 10.부터 각 2020. 5. 8.까지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5. 15.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1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2 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김호석

별지